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2025. 5. 19.(월) 11:00 < 5.20.(화) 조간 > 배포 2025. 5. 19.(월)

지자체의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권한 확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경제자유구역의 개발계획 변경 안건을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 상정하지 않고 지자체가 자체 변경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5년 5월 20일에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는 '제3차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23.12월)의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확대' 정책의 후속조치로서, 그간 전문가 용역, 지자체 의견 수렴,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 절차 등을 거쳐 마련하였으며,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은, 첫째, 사업비용에 대한 자체변경 범위를 기존 10% 이내에서 지자체에서 제한 없이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고, 둘째, 사업기간의 자체변경 범위를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였으며, 셋째 경제자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관광단지로 중복 지정된 단위지구는 지자체의 면적변경 자체허용 범위를 기존 10%에서 30%까지로 확대하였다.

마지막으로, 그간 엄격하게 제한하여 온 유치업종 변경 제도를 대폭 완화하여, 기존에 지정한 '경제자유구역 핵심전략산업'('21.11월, 산업부고시)의 업종은 기존 단위지구내 허용업종 외에 별도로 자체 추가가 가능하도록 하고, 2023년 8월에 산업부에서 발표한 '산업단지 킬러규제혁파' 내용 중 산업단지 관련 규제혁신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①입주 허용업종을 5년마다 재검토하고, ②업종특례지구*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기존 표준산업분류표에 해당하지 않는 ③신산업에 대한 입주업종 심의제도 등을 도입하였다.

* 산업단지에 농업, 건설업 등의 금지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의 입주를 허용하는 제도

산업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이현조 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지역 주도의 신속한 개발이 가능하여졌고, 경제자유구역 내 핵심전략산업 등을 포함한 첨단산업 육성이 한층 용이해 지는 등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경제자유구역기획단 개발투자지원팀	책임자	과 장	조원철 (044-203-4650)
		담당자	사무관	최승민 (044-203-4651)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참고1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시행령 개정 내용 요약

□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제5조의2 제4항(경미한 사항)

구 분	기 존	개 정 안
사업비용	· **10% 증감**	· **지자체 자율변경 (제한 없음)**
사업기간	· **1년** 이내	· 1년 → **2년**이내
면적 (토지 이용 계획)	· 지구면적 100만㎡ 기준(기준면적) - 100만㎡ 미만 : 총 면적의 **10%**이내 - 100만㎡ 이상 : 총 면적의 **10만㎡**이내	· **관광단지**에 한하여 **관광진흥법 기준을 적용하여 완화** * 단위지구 내 관광단지 면적 **30%이내 자율변경** · 관광단지 외 토지는 현행 기준 유지
유치산업 (입주업종)	· **자체변경제한** * 예외적으로 업종배치계획변경, 태양광발전업 추가만 가능	· **핵심전략산업**(산업부고시) **업종 추가 자율화** · **산단 킬러규제 혁파**('23.8월) 중 '**입주허용 업종 자율화 제도*** 도입 ① 산단입주 가능 업종 주기적(5년단위) 재검토(**시행령**) ② 업종특례지구 도입(**시행령**) ③ 신산업 입주업종심의(**하위법령 위임 근거규정 마련**)

□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31조 (권한의 위임) 등 기타

○ 규제 완화에 따른 관리 강화를 위해 **지자체 자체변경 한 날로부터 10일내 관련 자료 송부** 및 **법령 현행화** 등

참고2 현행 경제자유구역법령상 지자체 자체변경 기준

경제자유구역법시행령 제5조의2(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

④법 제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행정구역의 변경 등으로 인한 해당 경제자유구역의 명칭 변경

2. 단위개발사업지구의 면적 변경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단위개발사업지구의 총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10만제곱미터 미만의 면적 변경

나. 단위개발사업지구의 총면적이 10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단위개발사업지구 총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의 면적 변경

3. 제2호에서 정한 면적의 범위에서 토지이용계획이나 주요 기반시설계획 등의 변경

4. 단위개발사업지구 수용예정 인구 수의 100분의 10 미만의 변경

5. 지형이나 지질사정으로 인한 주요 기반시설계획의 변경

6. 산업유치계획 중 유치산업의 배치계획 변경 또는 유치산업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한 「전기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발전사업의 추가

7. 「환경영향평가법」 제29조에 따른 협의내용,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개선필요사항 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변경(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변경사항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해당 변경범위에 한정한다)

8. 개발사업시행지역의 변동이 없는 범위에서 착오 등에 의한 시행면적의 정정

9.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도로계획 또는 상하수도계획의 변경

10. 개발사업시행기간의 단축 또는 1년의 기간 내에서의 연장

11. 재원 조달방법 항목에 적힌 금액 기준으로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증감

12. 개발사업시행자의 취소 및 대체지정 등 개발사업시행자의 변경

1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항에 준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참고3 경제자유구역별 핵심전략 사업

□ 관련 근거 : 경제자유구역법 제7조의7(핵심전략산업의 선정) 제2항

○ 경제자유구역을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신산업 거점으로 육성

□ 선정 기간 : 2021. 11. ~ 2026.11 (5년단위)

□ 선정 절차 : 지자체 요청 → 관계부처 의견 수렴 → 경자위 심의 → 고시

지역	분야 (세부코드 수)
인천 (56)	바이오・헬스케어(11), 스마트제조(17), 항공·복합물류(9), 지식·관광서비스(19)
부산진해 (56)	복합물류·운송(14), 스마트수송기기(22), 첨단소재·부품·장비(13), 바이오헬스케어(7)
광양만권 (50)	기능성화학(10), 그린에너지(13), 금속소재·부품(21), 물류·운송 산업(6)
대구경북 (49)	ICT·로봇산업(18), 의료·바이오(14), 미래모빌리티(17)
경기 (26)	미래모빌리티(15), 의료·바이오(3), 수소에너지(4), 물류·컨벤션(4)
충북 (49)	바이오·헬스(18), 스마트IT부품(14), 항공모빌리티(11), 에너지소재부품(6)
강원 (40)	휴양형 관광레저(8), 수소에너지(17), 첨단소재부품(15)
광주 (53)	미래형자동차(19), 스마트에너지(16), AI융복합(18)
울산 (54)	미래모빌리티(24), 미래화학신소재(15), 수소·저탄소에너지(15)